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6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18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03.28.) 등을 거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배동 11-22 일원 특별계획구역④-2에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특별계획구역④-2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 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	35~37	주간선 도로	750	삼각지 광장	원효로 1가	일반 도로	한강로 1가	'52.03.25. (내고제23호)	백범로
변경	대로	1	1	35~37	주간선 도로	750 (68.5)	삼각지 광장	원효로 1가	일반 도로	한강로 1가		사업구간 일부확폭
기정	대로	3	13	25	주간선 도로	2,300	만리동 광장	문배동	일반 도로	원효로 입구	'36.12.26. (총고제722호)	청파로
변경	대로	3	13	25	주간선 도로	2,300 (7.8)	만리동 광장	문배동	일반 도로	원효로 입구		도로 가각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116 (19.4)	문배동 11-20	문배동 7-39	일반 도로	-	'01.07.10 (서고제229호)	
기정	소로	3	20	6~8	국지 도로	56	문배동 10-3	문배동 11-24	일반 도로	-	'01.07.10 (서고제229호)	
변경	소로	3	20	6~8	국지 도로	56 (27.0)	문배동 10-3	문배동 11-24	일반 도로	-		일부구간 도로 선형 변경

※ ()는 특별계획구역 내 사항임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	대로 1-1	일부구간 도로 폭원 변경	· 백범로 확장계획선을 반영하여 구역내 도로 확폭
대로 3-13	대로 3-13	도로가각 변경	· 대로 1-1 일부 변경에 따른 도로가각 위치 변경
소로 3-20	소로 3-20	일부구간 도로 선형 변경	· 용산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④-2)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구간 도로 확폭

2)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 없음)

3)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변경 없음)

나. 공간시설

1) 광장 결정조서 (변경 없음)

2) 녹지 결정조서 (변경 없음)

3) 공원 결정조서 (변경 없음)

4)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①	공공공지	문배동 10-16 일대	537.0	감) 537.0	-	2010.12.02. (서고 제2010-438호)	특계④-2

※ 도면표시번호 ②~⑦ : 변경 없음(기재 생략)

■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537.0㎡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의 구역변경 (분리)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마. 보건위생시설 결정조서 (변경 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변경)조서

- 1)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변경 없음)
 2) 후암동 주거지구 (변경 없음)
 3) 남영동 상업·업무지구 (변경 없음)
 4) 문배동 업무지구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가구 번호	동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	문배동	10-3 외 1필지	793.4	특별계획구역④-1 (793.4㎡)	특별계획구역④-1 (793.4㎡)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구역분리 및 면적 변경
		11-22 외 5필지	1,620.9 ^{주)}	특별계획구역④-2 (3,991.6㎡)	특별계획구역④-2 (1,620.9 ^{주)} ㎡)	
		11-21 외 4필지	2,419.7		특별계획구역④-3 (2,419.7㎡)	

주) 도로가각부 문배동 10-17 외 2필지 면적 49.0㎡ 특별계획구역④-2 편입

※ 상기 지번 외 변경 없음(기재 생략)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특별계획구역 분리 조정 - 특별계획구역④-2 → 특별계획구역④-2, 특별계획구역④-3	• 사업실현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④-2를 특별계획구역 ④-2, 특별계획구역④-3으로 분리 조정
• 특별계획구역 변경 - 특별계획구역④-2 면적(49.0㎡) 증가	• 도로가각부 문배동 10-17 외 2필지 특별계획구역④-2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49.0㎡)

- 5) 문배지구 (변경 없음)
- 6) 신계지구 (변경 없음)
- 7) 전자상가지구 (변경 없음)
- 8) 한강로 지구 (변경 없음)
- 9) 정비창 전면지구 (변경 없음)
- 10) 아세아아파트 주변지구 (변경 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 (변경 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1) 차량출입불허구간

구 분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 고
기정	한강로변, 원효로변, 용호로변, 백범로변, 서빙고로변 등	• 폭 20m 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 서 정한 차량출입금지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변경	한강로변, 원효로변, 용호로변, 백범로변, 서빙고로변 등	• 폭 20m 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 서 정한 차량출입금지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구역 분리로 백범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조정)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적용기준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백범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조정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구역 분리에 따라 변경되는 특별계획구역 ④-2의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므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백범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조정

2) 차량출입구간 (변경 없음)

다. 친환경요소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라. 인센티브 항목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기준

-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과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계획해야 함
-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고,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을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함
- 친환경 인센티브를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이 가능함

- 연면적 1만㎡ 초과 건축물 및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계획 시 총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충족하여야 함
- 전층 권장용도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하며 꼭대기층 개방은 최상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을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만 인정함. 최상층 개방 미준수할 경우 전층 권장용도 산정시 최상층도 포함하여 적용함
-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전면공지 등)에 관한 용적을 완하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적용 가능함(용산구 고시 제2000-25호 미관지구내 건축선 지정 참고) 또한,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로 인한 면적도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함
-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2017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 상기 지침은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에 한함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④	계		4,785.0	증) 49 ^{주)}	4,834.0		
		1	문배동 10-3 일대	793.4	-	793.4	2010.12.02. (서고 제2010-438호)	
		2	문배동 11-22 일대	3,991.6	감) 2,370.7	1,620.9	2010.12.02. (서고 제2010-438호)	특계④-2 구역 분리 및 면적 변경
		3	문배동 11-21 일대	-	증) 2,419.7	2,419.7	-	

주) 도로가각부 문배동 10-17 외 2필지 면적 49.0㎡ 특별계획구역④-2 편입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 외 변경 없음(기재 생략)

■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	1	· 변경 없음	
	2	· 위치 : 용산구 문배동 11-22 일대 · 면적: 1,620.9㎡	· 사업실현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④-2를 특별계획구역④-2, 특별계획구역④-3으로 분리 조정 · 도로가각부 문배동 10-17 외 2필지의 특별계획구역④-2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49.0㎡)
	3	· 위치 : 용산구 문배동 11-21 일대 · 면적 : 2,419.7㎡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④ 계획지침(기정)

구 분		계 획 지 표				비 고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 현재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밀 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이하 • 허용용적률 : 800%이하 • 상한용적률 : 1,000%이하 • 주거복합 건립시 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				
		주택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1,000% 이하
		60 이상 ~ 70 미만		450% 이하	60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490% 이하	65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530% 이하	70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560% 이하	750% 이하	
30 미만		600% 이하	800%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주거 대 비주거로 분배						
높 이		특별계획 구역④	구분	순부담율 15%이상시	순부담율 20%이상시	
			1	• 최고높이 50m이하	• 최고높이 50m이하 (우수 : 60m)	
			2	• 최고높이 80m이하	• 최고높이 110m이하 (우수 : 130m)	
			• 특계 ④-1,2 통합개발시 : 최고높이 110m이하 (우수 : 130m)			
용도	불 용 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공장 •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사술소 및 안마원 • 장례식장 •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창고시설 • 교정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권 장 용 도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 7호의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선		• 간선가로변 : 건축한계선 3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1, 2m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특별계획 구역④	• 통합개발시 순부담율 : 10.0%이상 • 분리개발시 순부담율 : 15.0%이상(순부담율 20%이상시 높이계획 별도지침 적용) - 소로 3-20 일반도로 개설(B : 6~8m) - 소로2-4 일부개설 (B : 8m) - 공공공지 조성			
기타지침		• 특별계획구역 ③,④는 백범로 확장계획에 따라 지침도 상의 도로확장저촉부분은 조성 후 기부채납 할 것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중 특별계획구역④에 해당하는 내용만 표기

※ 우수디자인을 통한 건축심의 인정으로 최고높이 완화가능시 ‘우수’ 로 표현

※ 상기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17.7)’ 준용

■ 특별계획구역④ 계획지침(변경)

구 분		계 획 지 표				비 고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 현재 :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밀 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이하 · 허용용적률 : 800%이하 · 상한용적률 : 1,000%이하 · 주거복합 건립시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				
		주택연면적 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45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490% 이하	65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530% 이하	70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560% 이하	750% 이하			
30 미만		600% 이하	800%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주거 대 비주거로 분배						
높 이	특별계획구역 ④	구분	순부담율 15%이상시		순부담율 20%이상시	
		1	· 최고높이 50m이하		· 최고높이 50m이하 (우수 : 60m)	
		2	· 최고높이 65m이하		· 최고높이 85m이하 (우수 : 105m)	
		3	· 최고높이 5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우수 : 95m)	
용도	불 용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공장 ·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장례식장 ·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창고시설 · 교정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권 장 용 도	·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 7호의 판매시설(지상부만 인정) - 제 11호의 노유자시설 - 제 13호의 운동시설 - 제 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선		· 간선가로변 : 건축한계선 3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1, 2m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특별계획구역 ④	· 통합개발시 순부담율 : 10.0%이상 · 분리개발시 순부담율 : 15.0%이상(순부담율 20%이상시 높이계획 별도지침 적용) - 소로 3-20 일반도로 개설(B : 6~8m) : 특별계획구역④-3 - 소로2-4 일부개설(B : 8m) : 특별계획구역④-3 ※ 특별계획구역④-3의 공공기여계획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순부담율 기준(15.0%) 이상으로 결정			
기타지침		· 특별계획구역 ③,④는 백범로 확장계획에 따라 지침도 상의 도로확장저촉부분은 조성 후 기부채납 할 것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중 특별계획구역④에 해당하는 내용만 표기

※ 우수디자인을 통한 건축심의 인정으로 최고높이 완화가능시 '우수' 로 표현

※ 상가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17.7)' 준용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 구청장) (변경 없음)

III.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세부개발계획 결정 사항

-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 없음)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 없음)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④-2	I	문배동 11-22 일원	1,417.5	획지
		-	문배동 11-21 일원	203.4	기부채납(도로)

■ 가구 및 획지 결정 사유서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용산구 문배동 11-22 일원	• 획지 - 면적 : 1,417.5㎡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대상지에 업무 및 근린생활 시설 건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획지로 결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가. 건축물 용도 계획 (변경 없음)

나. 건축물 개발밀도 계획 (변경 없음)

다. 건축물 높이계획 (변경 없음)

라.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1) 기반시설 설치계획

도면번호	기반시설	면적(㎡)	비고
A	도로	203.40	• 백범로 일부 확폭 • 총 도로 면적 : 203.40㎡ • 도로내 국공유지 제외면적 : 4.84㎡ • 도로 순부담 면적 : 198.56㎡(12.25%)

※ 추후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은 조정 가능

2) 공공기여 시설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사회 복지 시설	연면적	827.48㎡ • 계획연면적(전용 500.47㎡ + 공용 327.01㎡) • 지상3층, 지상1층(전용출입구) 설치 ※ 공용면적은 전용출입47㎡ 전용코어,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공사비	2,811,000원 • 2017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구 분		내 용	비 고
사회 복지 시설	설치비용	2,326,046,280원	• 공사비 ×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부지가액	14,924,000원/㎡	• 인근 토지 실거래 사례 없을시 공시지가 2배 • ‘문배동 11-22’ 공시지가 : 7,462,000원/㎡(2017.1.기준)
	환산부지면적	155.86㎡ (9.62%)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2,326,046,280원 ÷ 14,924,000원/㎡ = 155.86㎡
	사회복지시설 지분면적	79.92㎡ (4.93%)	• 대지면적 × 기부채납시설 전용면적 ÷ 전체건축물 전용면적 • 1,417.50㎡ × 500.47㎡ ÷ 8,877.06㎡ = 79.92㎡
총합계		235.78㎡ (14.55%)	• 환산부지면적 + 사회복지시설 지분면적 • 155.86㎡ + 79.92㎡ = 235.78㎡

※ 상기 내역은 “2017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산정되었으며, 조성 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마.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 없음)

바.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면공지	• 인도부속형 - 폭6m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 • 차량부속형 - 폭6m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 기존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전면공지(인도부속형) 조성 - 청파로, 백범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 기존보도 및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	
	• 조성지침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 조성지침 - 담장, 계단, 화단, 간판 등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조성 - 공공부문 가로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 식재 권장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변경 없음)

다. 친환경 요소에 관한 계획

구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자연지반 보존	- 저층부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등의 투수성 재료로 조성 - 당해 지하부에는 인공구조물(지하주차장, 저수조 등) 미설치시만 인정	- 저층부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등의 투수성 재료로 조성 - 당해 지하부에는 인공구조물(지하주차장, 저수조 등) 미설치시만 인정	
옥상녹화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따라 설치	
중수도시설	중수도의 설치대상 및 시설기준은 수도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	중수도의 설치대상 및 시설기준은 수도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	
빗물이용시설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	
에너지 절약계획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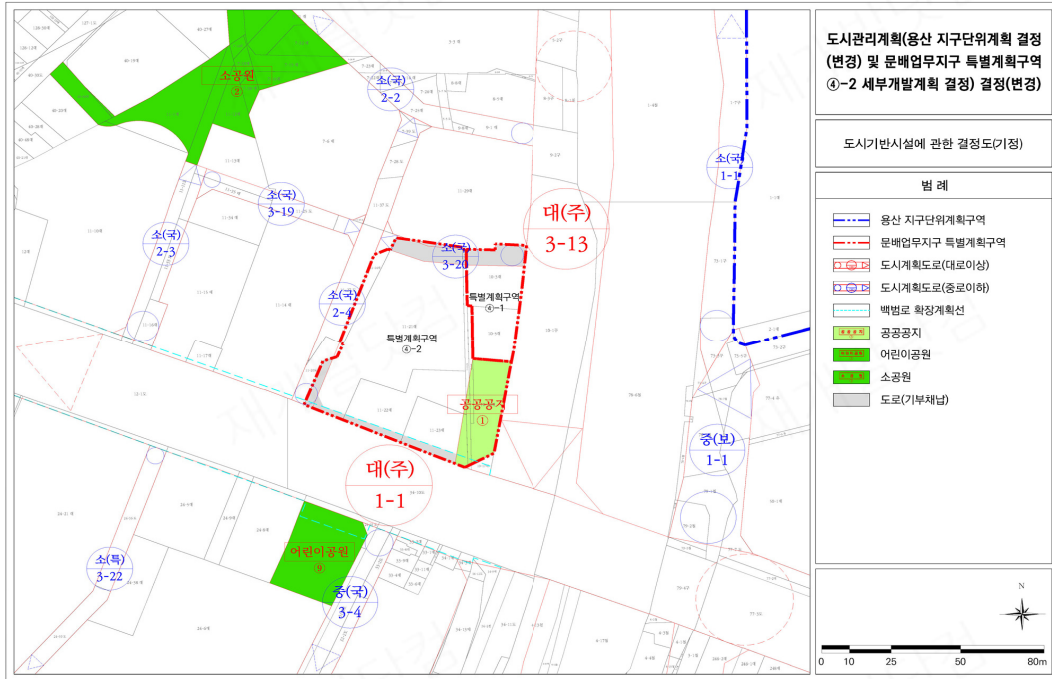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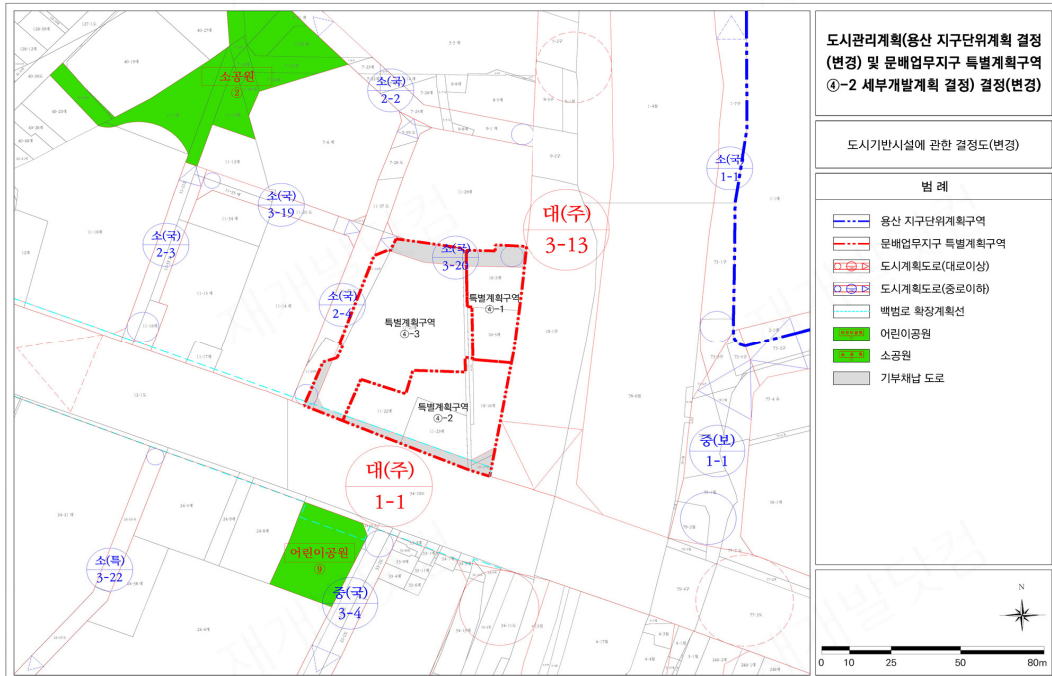
VI.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시계획과(☎ 2199-7422) 및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2133-8380)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i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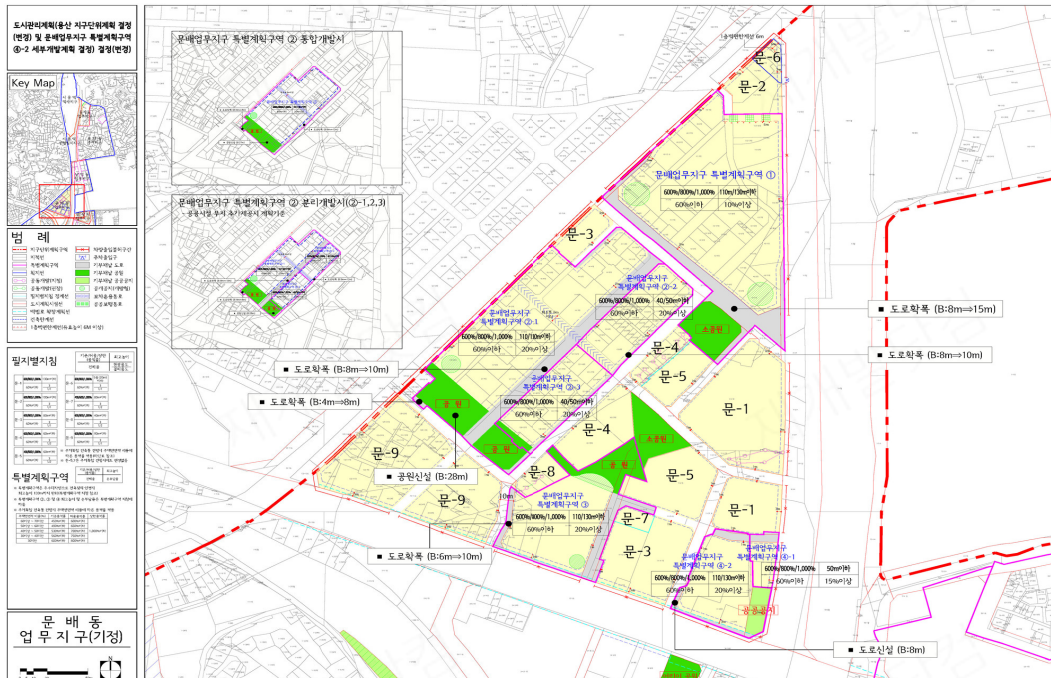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기정)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변경)

